

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설명 자료

2015. 5.



국민권익위원회

1 추진 배경

-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국가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을 바탕으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법률의 시행('16.9.28. 시행 예정)에 대비하여 법률의 위임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 필요
 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절차,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선물 등의 가액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

2 시행령(안)의 주요 내용

가. 윤리강령

- 사립학교, 학교법인 및 언론사는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조)
 -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체 윤리강령의 제정 지원 가능

나. 부정청탁의 금지 등

□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

-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*한 조치 외에 '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', '사무분장의 변경'을 규정(안 제4조)
 - ※ 직무참여 일시정지, 직무대리자 지정, 전보 조치(법 제7조제4항)
 - '전보' 조치의 악용·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'전보' 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치순서를 규정

□ 부정청탁의 내용·조치사항의 공개방법

-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
고려사항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5조)
 - (공개여부 결정) 공개 여부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이나 공개 여부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명시
 - ※ (고려사항) 과태료 부과,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여부,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
 - (공개방법) 국민의 접근성과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강화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

다.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

□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, 선물 등의 가액 범위

-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·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, 5만원, 10만원으로 규정(안 제6조, 별표 1)
-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, 선물 등의 범위와 함께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명시
 -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, 부조금과 선물·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10만원으로 규정

□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신고절차

- 민간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과 상한액을 달리 설정(안 제9조, 별표 1)

- (공직자)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(기고의 경우 1건당)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상한액 설정
 -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/2 한도까지 인정
- (공적업무종사자) 직급별 구분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
 - 공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공무 관련 외부 강의등의 경우 1회 100만원으로 설정
-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절차,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에 대해 규정(안 제10조, 제11조)

라. 법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방법

□ 부정청탁의 신고방법 등 관련

-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,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3조)
 - 신고사항 :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·이유,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의 내용
 - 신고방법 :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함께 제출

□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등 관련

- (공직자등)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과 절차 등을 구체화(안 제7조)
 - 신고사항 :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·이유, 제공자의 인적사항, 금품등의 종류·가액, 금품등의 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
 - 신고방법 :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신고 후 서면 제출하고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함께 제출
- (공공기관의 장) 인도 받은 금품등의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8조)

□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의견청취

- 조사기관·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**보완 요청 가능**(안 제13조)
- 위원회는 신고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설명, 자료·서류 등 제출, 의견진술 등 요구 가능(안 제14조)

□ 위원회의 신고처리 : 신고의 이첩, 종결, 송부

- **(이첩)** 신고사항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**60일 이내**에 감사원, 소속기관, 수사기관 등에 이첩(안 제15조)
- **(종결)** 허위신고,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첩하지 않고 종결(안 제16조)
 - ※ 이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고 가능
- **(송부)**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여부가 **명백하지 않은 경우**로서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안 제17조)
 - ※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

□ 조사기관의 처리 등

- 조사기관은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,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또는 징계 등 시행(안 제18조)
 - 다만, 허위신고,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종결 가능
- 공공기관장은 법 위반행위 신고·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**청렴자문위원회(자문기구)** 구성·운영 가능(안 제19조)

□ 조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

-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등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와 위원회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(안 제20조)
 - ※ 결과 통보사항 :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, 포상금·보상금 지급 사유 해당 여부,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 등
- 조사등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21조)

□ 수사 개시·종료 통보

-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·종료한 때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(안 제22조)

□ 위반행위의 기록·관리 등

- 위반행위자 인적사항, 법 위반내용, 신고 내역 및 처리 내역 등을 기록한 자료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관하도록 규정(안 제23조)
 - 공공기관의 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을 촬영·녹화한 사진·영상과 금품등의 종류·성질·가액 등을 기록한 자료도 함께 보관

마. 신고자 보호·보상 등

□ 보상금·포상금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절차 등 마련

- 보상금·포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 설치 가능(안 제24조)
 - ※ 소위원회는 사전 검토하여 보고하는 기능만 있을 뿐 의결 기능은 없음
 -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그 중 1인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됨
- 조사기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(안 제25조)
 -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대상자 추천
 - ※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함께 제출

□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- 보상금·포상금 지급업무,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가능(안 제26조)
 -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, 보상금·포상금 관련 정보, 교육 및 서약 실시 결과 등을 정보시스템에 입력

바. 기타

□ 교육

-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및 서약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이를 위한 계획 수립(안 제27조)
 - 위원회는 전문강사 양성,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·보급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교육 지원

□ 징계기준 마련 근거

-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 유형, 정도, 과실 경중, 정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(안 제28조)

□ 과태료 부과 취소절차

-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(안 제29조)
 - 과태료 부과 취소 신청자는 인적사항, 신청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형사판결 관련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

□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

- 법 위반 관련 신고의 접수·처리, 신고자 보호·보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(안 제30조)
 - ※ 고유식별정보 등 : 민감정보,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·연락처·직업 등 인적사항

참 고

시행령(안)의 주요 내용

목적	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(제1조)	
부정청탁 금지 등	▶ 부정청탁의 신고방법(제3조) ▶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(제4조) ▶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방법(제5조)	
금품등 수수 금지 등	금품등 수수 금지	▶ 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6조) ▶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(제7조) ▶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(제8조)
	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	▶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기준 등(제9조) ▶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(제10조) ▶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(제11조)
	▶ 제공자에게 금품등,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비용의 청구(제12조)	
위반행위의 신고·처리 등	▶ 신고내용의 확인 등 및 의견청취등(제13조·제14조) ▶ 신고의 이첩,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, 송부(제15조·제16조·제17조) ▶ 조사기관의 처리,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등(제18조·제20조·제21조) ▶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(제19조) ▶ 수사기관의 수사 등(제22조) ▶ 위반행위의 기록·관리방법(제23조) ▶ 징계기준(제28조) ▶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(제29조) ▶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(제30조)	
보호·보상 등	▶ 포상금 등의 지급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(제24조) ▶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(제25조) ▶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(제26조)	
공공기관 운영 지원	▶ 윤리강령(제2조) ▶ 교육(제27조)	